

의안번호	제3051호
의결	2026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1. 9.

#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5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1. 9.
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과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 사항을 「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공개 및 감면 상위법 근거 조문 정비(안 제12조)
- 나.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4조~안 제6조)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, 안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1조, 제34조
- 2)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1227(2025.10.29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707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10. 27.~2025. 11. 17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23조제2항”을 “제23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영 제23조제3항”을 “영 제2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업무지정) ① (생략)</p> <p>제4조(실무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고성군 도로기반시설물 실무협회의(이하 “협회의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</p> <p>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</li> <li>2.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</li> <li>3.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 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</li> <li>4.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</li> <li>5.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분담원칙,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</li> </ol>	<p>제3조(업무지정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

6. 시설물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 
및 전산자료의 공동활용에 관  
한 사항

7.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유관기  
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 
항

제5조(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 
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 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공간정보 총괄부서  
담당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 
공간정보 총괄부서 담당주사가  
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 
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
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도로기반지하  
시설물 관리부서의 담당주사  
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제2조제6호에  
따른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 
급 이상의 직원으로서 해당  
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  
로 한다.

④ 협의회는 정기회는 다음연도  
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며, 위원

<삭 제>
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
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  
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 
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 
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 
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 
하며, 당해 직위 인사이동의 경  
우 그 후임자로 한다.

제12조(수수료) ① 제11조에 따른  
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  
료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  
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  
23조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  
하고, 고성군 홈페이지와 국가  
공간정보센터에 공개하여야 한  
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  
구하고 영 제23조제3항에 의하  
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 
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 
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.

③·④ (생략)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
<삭 제>

제12조(수수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2  
3조제5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영 제23조제6항-----  
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으로 정한다.

##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  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 
따른 조문 정비 등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.

작성자: 열린민원과장 박 경 희

## 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**제31조(협력체계 구축)**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·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34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**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 6. 3., 2021. 3. 16.>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 제3항, 제35조의2제1항, 제35조의3,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)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3. 16., 2024. 3. 19.>

1.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. 「민법」, 「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
나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  2. 학술연구,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
-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3. 16.>

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16.>

## 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25. 2. 21.] [대통령령 제35246호, 2025. 2. 7., 타법개정]

**제23조(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)**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1.>

② 관리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, 제3항, 제4항,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같다)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3. 15.>

1.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완료하였을 것
2. 제공을 신청받은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

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시설,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설 또는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. <신설 2022. 3. 15.>

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22. 3. 15.>

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(實費)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,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(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)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15. 6. 1., 2022. 3. 15.>

⑥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1., 2022. 3. 15.>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
2.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